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0회 정례회
2023.07.14.(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유역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통합물관리 사업 및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안 제17조 및 제1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책추진

및 유역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미호강 유역의 안정적인 물확보와 물환경 보전·관리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를 통한 공공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유역 환경 보전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가치를 이어 나아가는데 필요한 물환경 보호, 하천의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1]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통합물관리', '통합물관리 사업' 및 '유역공동체'에 대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통합물관리 사업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음.

○ 조례안 예고(‘23. 6. 8.~‘23. 6. 28.)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호강 통합물관리 및 유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조문 상호 간에도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가치를 이어나아가는데 필요한 물환경 보호, 하천의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다만, 본 조례 제정의 비용추계 결과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한 잠정적 비용추계임으로 해당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과 시군비 및 기타 기금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3~‘27년】 5년간 총 1조1,832억원 정도(국비 6,345/도비 1,442/시군비 등 4,044)